

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

1 보고 근거

-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42조(정관의 변경)
 - 정관 변경 시, 시장 인가 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

2 개정 사유

- 직무 인식 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지원직 명칭 정비
 - 직군 명칭 변경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및 노사 합의 완료('21. 3월)

3 주요 내용

- 직원 직군 명칭 변경(별표1)

현 행	개 정
운영지원직	운영직

- 용어 일괄 개정을 위한 부칙 신설
 - 하위 규정(직제규정, 인사규정 등) 용어 일괄 개정을 위한 근거 마련

4 개정 절차

- 이사회 의결('21. 9. 9.)
-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 인가 후 공포·시행

정관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				개 정									
<별표2> (제16조)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원 표</h2> (단위:명)										<별표2> (제16조)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원 표</h2> (단위:명)									
					직 원										직 원				
		일 반 직					일 반 직					일 반 직					일 반 직		
총 정원	임원	계						전문직 (연직)	운영 지원직	총 정원	임원	계						전문직 (연직)	운영직
			소계	1급	2급	3급	4급 이하						소계	1급	2급	3급	4급 이하		
280	4	276	231	6	10	27	188	5	40	280	4	276	231	6	10	27	188	5	40
<신설>										부칙(20 . . .)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									